



## 학점은행제 운영 규정

규정번호	3-2-3
제정일자	2011.11.21
개정일자	2019.11.14
책임부서/팀·계	평생교육원

### 제1장 총 칙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「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」(법률 제13229호)에 의거하여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로써 학점은행제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 
<2019.11.14. 개정>

### 제2장 개설과목 및 학생정원

**제2조(개설과목 및 정원)** 개설과목 및 정원은 교육부 학점은행제운영을 위한 표준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학습과목평가인정 신청 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허가를 득하여 결정한다. <2017.4.14. 개정> <2019.11.14. 개정>

### 제3장 수업연한

**제3조(수업연한)** 각 과정의 수업연한은 학기별로 한다.

### 제4장 수업일수 및 휴업

**제4조(수업일수)** 수업일수는 15주(각 과목당 45시간)이상으로 한다.

**제5조(휴업)** 휴업일은 다음의 각호와 같다.

1. 개교기념일
2.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

**제6조(임시휴업)** ① 총장은 비상재해 또는 급박한 상황이 발생할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.

② 임시휴업 및 휴업기간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### 제5장 모집 및 지원절차

**제7조(모집)** 모집은 각 과목별로 한다.

**제8조(수강자격)** 고등학교 이상을 졸업한 사람 또는 고등교육법 제50조에 따른 전문학사학위 취득자 및 고등교육법 제35조에 따른 학사학위 취득자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. <2019.11.14. 개정>

**제9조(지원절차)** 수강을 희망하는 사람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입학원서
2. 사진 반명함판 1매
3. 고등학교이상 졸업증명서(검정고시 출신은 합격증명서)
4. 기타 첨부 서류

**제10조(전형방법)** 전형방법은 서류전형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새로운 전형절차를 추가할 수 있다. <2019.11.14. 개정>

**제11조(수강허가)** 수강허가는 총장이 행한다. 수강이 허가된 사람은 소정 기일내에 수강을 위한 소

정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.

## 제6장 수강신청 및 등록

**제12조(등록)** 수강생은 매 학기 등록기일 내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. 등록절차는 소정의 수강료를 납부함으로써 완료된다. <2019.11.14. 개정>

**제13조(수강신청)** ① 수강신청은 해당 학기에 수강할 교과목을 원서 접수 시에 신청한다. 수강 학점은 시간제등록포함 년간 42학점(한 학기 24학점)을 초과하지 못한다. <2019.11.14. 개정>

② 해당과목 수강신청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수강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수강할 수 없다.

## 제7장 교과목 이수 및 성적

**제14조(교과목이수시간)** 이수시간은 교과목당 45시간(3학점기준) 이상을 기본으로 한다.

**제15조(시험)** 시험은 중간 및 기말에 실시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.

**제16조(응시자격)** 각 과목별 총 수업시간의 20%이상 결석하면 당해 과목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.

**제17조(학업성적)** 학업성적은 각 교과목별로 중간·기말고사, 수시평가, 과제물, 출석 등으로 평가하며, 100점 만점으로 한다.

**제18조(교과이수인정 및 취소)** ① 학업성적 60점 이상이고 출석률이 전체출석 일수의 80%이상인 교과목에 대해서는 이수를 인정한다.

② 이수가 인정된 교과목이라도 과오 또는 부정행위가 판명되었을 때에는 이를 취소한다.

## 제8장 학점은행제 학위수여

**제19조(학점은행제 학위수여의조건)** ① 학점인정 등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은 자가 본 대학의 총장이 수여하는 학위를 취득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.

1.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자

2. 학점인정 등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2년제는 교양 15학점이상, 전공 45학점이상 총 80학점 이상, 3년제는 교양 21학점이상, 전공 54학점이상 총 120학점이상 인정받은 자

3. 본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이 2년제 48학점이상, 3년제 65학점이상인자

② 제1항 제3호의 본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에는 정규교육과정에서 취득한 학점과 시간제등록을 통하여 취득한 학점을 포함한다.

③ 본 대학의 총장에 의한 학위수여 시 학점인정 범위는 정규교육과정에서 취득한 학점, 시간제등록을 통하여 취득한 학점,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으로 한다. <2019.11.14. 개정>

**제20조(학점은행제 학위수여의 절차)** 학칙 제34조의3의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한 자가 본 대학의 총장이 수여하는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위수여예정일 21일 이전에 학칙사본, 학위증서식을 첨부하여 학위수여 예정자 명단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. <2019.11.14. 개정>

**제21조(학점은행제 학위수여)** ① 학칙 제34조의3의 학위수여요건을 충족한 자에게는 평생교육진흥원의 심의 및 본 대학 졸업 사정위원회를 거쳐 “별지 제3호 서식”에 의한 학위를 수여한다.

<2019.11.14. 개정>

② 제1항에 의하여 학위를 수여하는 경우, 학위의 종별 및 전공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법률 시행령에 의한 표준교육과정을 기준으로 하되, 그 학위종류나 전공이 표준교육과정상의 그것과 유사할 경우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 단, 유사성에 대한 판단은 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인정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. <신설16.05.23>

## 제9장 학습과정 운영

**제22조(학습과정 및 학점 당 수업시간)** ① 학습과정의 이수에 필요한 학습과정 당 수업 기간은 4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.

② 학습과정의 이수에 필요한 학점 당 수업 시간은 15시간(실험·실습·실기가 필요한 학습과정의 경우에는 30시간을 말한다)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.

**제23조(출석 및 수업 관리)** ① 학습과정별 담당 교수 및 강사는 학습자의 출결 사항을 출석부에 기록·관리하여야 한다.

② 교수 및 강사는 출석 현황을 작성하여 학습과정 종료일부터 1주일 이내에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교수 및 강사는 학습과정 당 수업시간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, 휴강 등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신안산대학교 학점은행제운영지침에 따로 정한다. <2019.11.14. 개정>

**제24조(성적평가)** ① 시험 성적, 출석 상황, 학습태도 등을 종합하여 학습자에게 성적을 부여하여야 한다.

② 학습자에게 성적을 부여하기 위하여 학습과정별로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.

③ 성적평가는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습과정은 절대평가를 할 수 있다.

1. 수강인원이 10명 미만인 학습과정
2. 실험·실습·실기로 이루어진 학습과정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험 실시, 성적평가 및 이에 따른 학습과정 이수의 인정 등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신안산대학교 학점은행제 운영지침에 따로 정한다.

**제25조(부정행위에 대한 조치)** ① 대리출석, 대리시험 또는 그 밖의 부정행위로서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행위를 한 학습자에게는 해당 학습과정의 성적을 부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.

②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에 따라 학점인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성적도 취소하여야 한다.

**제26조(학적 관리 등)** ① 학습과정 시작일 부터 3주일 이내에 학습자의 학적부를 생성·관리하며, 학적 관리 자료와 함께 영구히 보존 하여야 한다.

② 관련 법령 등에 따라 폐쇄명령 등을 받은 경우 또는 스스로 폐쇄하려는 경우에는 폐쇄 전까지 학적부 등 제1항에 따른 자료를 「평생교육법」 제19조에 따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.

③ 학습과정의 설치·운영과 관련한 장부 및 서류를 교육부장관이 정하여고시하는 바에 따라 보관·관리하여야 한다.

**제27조(상담창구의 운영)** ①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학습자에게 학습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학습자의 상담에 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상담창구를 운영하여야 한다.

② 교육훈련기관은 출석 또는 성적처리 등의 민원을 자체적으로 접수 처리할 수 있는 창구(신문고 등)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 <신설16.05.23>

## 제10장(학습자활동 및 장학금)

**제28조(자치회)** ① 학풍을 진작하고 학습자 상호간의 화합과 단결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각 과정마다 자치회를 구성할 수 있다.

② 자치회는 각 과정마다 회장과 총무 각 1인을 둔다.

**제29조 (학습자 활동의 금지)** 학습자는 본원 학습기간 동안 정치활동을 할 수 없으며, 집단행동·농성 등 학습에 지장을 주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.

**제30조(장학금)** ① 학습 태도와 품행이 단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학습자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② 학점은행제과정의 장학금 종류별 지급기준 및 금액은 <별표 3>과 같으며, 따로 정하는 경우 평생교육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. <2017.4.14. 신설> <2019.11.14. 개정>

## 제11장(수강료 반환)

**제31조(학습비반환)** 학습비 환불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제2항 관련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. <2016.05.23. 제정>

### 부 칙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규정은 2011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규정은 2016년 05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규정은 2017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규정은 2019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.